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61959 판결 [보증채무금]

참 조 조 문

민법 제105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재 판 경 과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6195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10. 6 선고 2005나33444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중소기업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A담당변호사 윤BA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신CA기금(소송대리인 변호사 김B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 10. 6. 선고 2005나334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주식회사 DA산업(이하 ‘DA산업’이라 한다)을 신용보증사고기업으로 지정하여 2003. 4. 18.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 제6조 제1항 제7호의 ‘기금이 채권자에게 채무자를 신용보증사고기업으로 정하여 통지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피고의 2003. 4. 18.자 통지서(을 제4호증)의 문면과 위 약관의 관련 규정 등을 살펴보면, 피고의 위 통지를 위 약관 제6조 제1항 제7호의 통지로 본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그 판단 중에는 피고의 위 통지는 단순히 신용보증사고가 있었음을 알리는 서면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니,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 약관조항의 의의 및 해당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약관의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기금이 채권자에게 채무자를 신용보증사고기업으로 정하여 통지한 때’를 독립된 신용보증사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약관 제6조 제1항 제7호는 위 약관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 소정의 신용보증사고사유와는 달리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피고가 대출은행인 채권자로부터의 통지 없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신용보증을 철회하거나 일시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의 신용보증사고기업 지정통지 자체를 보증부대출의 취급금지사유인 신용보증사고의 하나로 규정한 취지라고 해석되므로, 이 경우 위 약관 제6조 제3항 소정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된 후 당해

사고사유가 해소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피고가 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신용보증사고기업 지정을 해제한다거나 장래 보증부대출을 취급하여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여야만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피고의 신용보증사고기업 지정통지의 원인이 된 사유가 해소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신용보증사고사유가 해소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기업 지정통지의 원인이 된 DA산업에 대한 은행연합회의 신용불량규제가 해제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기업 지정통지로 인한 신용보증사고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신용보증사고사유의 해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은 피고가 DA산업을 신용보증사고기업으로 정하여 원고에게 통지한 이후 다시 피고의 자체적인 평가 결과 DA산업을 신용보증사고기업에서 해제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후,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가 DA산업에 대한 신용보증사고기업 해제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면책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신의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김용담